

# 물품 지원 협약서

조이킵스포츠(대표 이광재)와 진천군 체육회(김명식 체육회장) 이하 진천 런 족구단은 신의와 성실로 상호 협조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지원 협약을 체결한다.

## 제 1조 목적

본 선수 협약은 상호의 전략적 협약을 통하여 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이킵스포츠와 진천 런 족구단은 상호 협력관계를 갖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, 대한민국 족구 발전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포함한다.

## 제 2조 협약의 기간 및 변경

본 협약의 기간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, 기간은 2024년 02월 22일 ~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. 선수 구성 변경 및 연장은 반드시 협의를 통하여야 한다.

## 제 3조 협약의 내용

- 상호의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선수 협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한다.
- 상호의 공동 협의 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사항은 상호 간 사전 협의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그 위반 당사자가 부담한다.
- 진천 런 족구단은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하여 족구 경기에 임하며, 심판의 판정에 복종하고, 타인의 모범이 될 것을 협약한다.
- 진천 런 족구단은 공식 석상에서 조이킵스포츠가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일체의 용품을 착용하며, 조이킵스포츠는 협약상 지원 품목을 반드시 지급할 것을 협약한다.

5. 진천 런 족구단은 유니폼과 단체복에 조이킵스스포츠 기본 로고 외에 조이킵스스포츠 로고를 앞면 또는 뒷면에 1개 이상 들어가 있어야 한다.
6. 진천 런 족구단은 2024년 공식적인 행사 참가에 조이킵스스포츠가 지원하는 용품을 착용하고 운동을 한다.(팀 외에 개인적으로 교류전 참가는 제외)
7. 조이킵스스포츠는 진천 런 족구단에게 스폰서 계약조건으로 지원한 운동복에 대하여 진천 런 족구단의 용품 착용 초상권을 조이킵스스포츠의 카달로그 및 홈페이지 협찬상품 소개란에 사용하는 것에 진천 런 족구단과 조이킵스스포츠는 동의한다.
8. 진천 런 족구단은 조이킵스스포츠의 신제품 테스트 요청시 적극 의견을 수렴하며 조이킵스스포츠의 신제품 출시시 적극 홍보한다.
9. 계약 기간 계약팀 인원내 관한 Goods 사업을 통한 수익은 조이킵스스포츠에 있고 또한 상호 협조한다.
10. 진천 런 족구단은 조이킵스스포츠가 지원한 운동복에 동종업계 스폰서 문구를 넣는 것을 삼가고 문구를 넣어야 할 시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

#### 제 4조 해제

1. 본 계약기간 동안 진천 런 족구단에게 조이킵스스포츠의 사정으로 요청한 1달 이내에 용품을 지원하지 못할 시 진천 런 족구단은 조이킵스스포츠에게 서면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2. 진천 런 족구단은 조이킵스스포츠의 후원계약의 조건으로 지급한 용품을 착용하지 않고 공식경기에 출전할 경우 조이킵스스포츠가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배상 책임을 진다.

#### 제 5조 분쟁 해결

1.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원칙적으로 진천 런 족구단과 조이킵스스포츠는 상호 간의 합의에 따라 해결한다.
2.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진천 런 족구단의 주소의

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.

### 제 6조 특약 사항

1.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 사항으로 정하며, 일반사항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특약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.
  - 가. 족구화, 유니폼 등의 교환 발생의 건 <상호 간 협의>
  - 나. 방송 및 시합에서의 펜서비스를 위한 용품 지원의 건 <상호 간 협의>
  - 다. 선수단의 이름, 초상권 통한 Goods 상품 및 상품 개발 <상호 간 협의>

### 제 7조 기타사항

1.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.
2.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.
3.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.

### 제 8조 진천군 체육회(진천 런 족구단) 선수구성

성명	주민등록번호	비고
김우석	930112-1083024	선수
이승민	950519-1937314	“
박노현	921001-1011611	“
박서후	970117-1011612	“
김성길	990726-1575319	“



제 9조 용품 지원 내역

용 품		수량(EA)	단가(원)	금액(원)	모 델 명
개 인 용 품	족 구 화	3	120,000	360,000	상호협의
	경 기 복	3	120,000	360,000	"
	춘 추 복	1	180,000	180,000	"
	하 계 단 체 복	1	130,000	130,000	"
	동 계 단 체 복	1	180,000	180,000	"
	바 람 막 이	1	110,000	110,000	"
	반 팔 티	1	35,000	35,000	"
	여 분 바 지	1	50,000	50,000	"
	양말(크루삭스)	20	4,500	90,000	"
	장 갑	5	5,000	25,000	"
	가 방	1	70,000	70,000	"
	방 한 용 의 투	1	180,000	180,000	"
	소 계	39	1,184,500	1,770,000	.
	합 계	5(명)	1,770,000	8,850,000	.
단 체	족 구 공	170	48,000	8,160,000	상호협의
	기 타	1(식)	2,990,000	2,990,000	*특약사항
	합 계	171	3,038,000	11,150,000	.
총 계		8,850,000원 + 11,150,000(원) = 20,000,000(원)			

\* 특약사항 제6조 특약사항 : 방송 및 시합에서의 팬서비스를 위한 용품 지원의 건 <상호 간 협의>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2부를 작성, 서명 날인 후 “조이킥스포츠”와 “진천군 체육회(진천 런 족구단)”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계약 일자 : 2024년 2월 22일



조 이 킥 스포 츠 (JOYKICK)  
대 표 이 광 재

이광재



진 천 군 체 육 회 (진 천 런 족 구 단)  
회 장 김 명 식

김명식